

여성가구주의 특성 및 경제활동 분석

- 여성배우자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혜원*

I. 서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여성가구주는 특이한 모습이 아니다. 통계청의 가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는 1975년에는 12.8%인 85만 가구를 차지했으나 2005년에는 전체 가구 중에서 21.9%인 349만 가구로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가 증가해 온 것은 이혼과 미혼가구의 증가 때문으로 설명된다. 이혼가구주는 1975년 4.3%에서 2005년 14.4%로 증가하였으며, 미혼가구주는 1975년 11.8%에서 2005년 23.2%로 증가하였다.

여성가구주 가구는 가족의 생계유지와 자녀양육을 여성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 맞벌이가 가능한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또한 저임금 직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성별 직종분리현상과 기업 내 승진사다리를 올라가기 힘든 유리천정의 문제가 중첩된 노동시장 환경하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는 유배우 남성가구주 가구에 비해 빈곤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김안나(2006)에서는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여 여성가구주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빈곤에 처할 위험이 3배 정도 높다고 측정하였고, 김수정(2008)에서도 유사한 값을 얻은 바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를 포함하여 기존의 연구는 주로 여성가구주의 빈곤 문제에 집중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한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에서의 특성과 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여성가구주가 비록 빈곤의 위험이 높지만 대부분의 여성가구주는 스스로 취업을 통해 빈곤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빈곤 탈출과 예방은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을 통해 이루어질 수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wkim@kli.re.kr).

1) 예를 들어 노혜진·김교성(2008), 김혜영·변화순·윤홍식(2008)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여성가구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가구의 양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기초한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여성가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여성가구 내부의 다양한 집단의 존재를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여성가구가 어떤 인적 특성을 갖는지 설명하고 취업과 비취업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상황을 개관한다. 제Ⅳ장에서는 취업한 여성가구의 업종, 직종, 종사상 지위, 근로조건 및 임금을 살펴보고, 제Ⅴ장에서는 여성가구의 실직과 재취업 동학에 대해 살펴본다. 제Ⅵ장은 요약과 이후 연구과제를 설명한다.

Ⅱ. 여성가구의 분류와 측정

가구주란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로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자이다. 가구주의 성 및 혼인상태를 기준으로 가구를 6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가구주 성별에 따라 남성가구주 가구와 여성가구주 가구로 구분되고, 각 성별로 다시 혼인상태에 따라 유배우가구, 미혼가구 그리고 이혼사별가구로 구분된다. 가구의 비중을 계산할 때 가구수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고 인구수 기준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개인에 초점을 둔 조사로서 가구 가중치가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구수 비중을 계산할 수는 없다. 다만 가구주의 인구가중치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가구의 비중을 측정할 수 있다.

여성가구는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를 지칭하는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는 여성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여성한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모자가구의 여성가구 이외에도 다양한 가구주가 포함되어 있다.

여성가구는 크게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와 그렇지 않은 여성가구로 구분된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가구는 다시 미혼여성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와 한번 결혼했으나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 남성과 헤어지고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로 구분된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남성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으나 남성배우자가 경제능력이 취약한 경우이며, 둘째는 남성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이다. 후자는 다시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남성배우자와 동거하지 않고 남성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남성배우자

와 동거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이다. 이 유형의 경우는 남편이 직장이 가정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헤어져 살면서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는 가구를 포함한다. 이러한 유형의 가구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윤택한 생활을 누릴 가능성이 높는데 비해서 남성배우자와 동거하되 남성배우자가 비취업상태에 있는 경우는 그 가구의 빈곤확률이 높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혼인상태 설문에서 유배우, 미혼, 이혼, 사별 여부를 묻고 있으나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변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가계조사에서는 동거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변수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동거 여부는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를 이용하여 가구내 남성배우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새롭게 변수를 생성해야 한다. 그런데 새롭게 생성된 변수는 동거 여부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실제로 동거하면서도 특정 월에 조사가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누락된 경우에는 비동거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동거 여부 변수는 동거자의 비중을 과소측정하는 편이가 존재한다.²⁾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비교할 집단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 여성가구를 남성가구주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행태는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를 비교할 경우 그 결과는 기존 남녀의 고용 및 임금격차 연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에서 여성가구주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여성 중에서 가구주와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글에서는 여성가구주와 여성 비가구주를 비교하되 여성 비가구주 중에서 남성가구주와 가구를 이루는 여성배우자를 중점적인 비교대상으로 삼아서 검토하고자 한다. 여성가구주는 생계를 책임지는 존재인데 비해 여성배우자는 직접적인 생계 부양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행태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글의 분석을 위해 주로 사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여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조사이다. 이하의 분석은 주로 2008년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다.

2) 패널자료화한 후에 분기별 자료를 만들어서 평가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모든 분기에 배우자가 없을 경우를 비동거로 정의할 경우 상대적으로 동거자가 과다측정되는 편이가 존재한다. 패널 자료를 만드는 것으로 인한 편이 또한 존재한다. 개인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을 만들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구아이디를 이용해서 패널을 만들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만 패널화된다.

III. 여성가구주의 인적 특성과 경제활동참가

1.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

여성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전체는 2008년 현재 2,027만 명이며, 이 중에서 취업자는 987만 명, 실업자는 265천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013만 명이다. 여성의 고용률은 48.7%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50.0%, 실업률은 2.6%이다. 남성의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72.6%로서 여성보다 확연히 높은 노동시장 결속도(labor market attachment)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을 기준으로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여 수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여성가구주는 여성가구원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높다.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5.1%인데 비해서 여성배우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0.1%로서 큰 격차를

〈표 1〉 경제활동상태별 인구수 및 비중

(단위: 천 명, %)

	취업	비중	실업	비중	비경제활동	비중	합계	비중
남성 총계	13,703	83.4	505	88.4	5,117	77.4	81.9	81.9
여성 총계	9,874	16.6	265	11.6	10,134	22.6	18.1	18.1
여성가구주	2,718	27.5	66	24.9	1,490	14.7	21.1	21.1
여성배우자	5,047	51.1	68	25.8	5,085	50.2	50.3	50.3
기타가구원	2,110	21.4	131	49.3	3,559	35.1	28.6	28.6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2〉 여성 유형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15세 이상	여성가구주	65.1	2.4	63.6
	여성배우자	50.1	1.3	49.5
	기타가구원	38.6	5.8	36.4
25 ~ 54세	여성가구주	79.9	3.0	77.5
	여성배우자	54.6	1.4	53.8
	기타가구원	73.2	4.7	69.8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3〉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경제활동상태 비중

(단위: 천 명, %)

		인구수	취업자 비중	실업자 비중	비경제활동 비중	합 계
15세 이상	유배우	988	72.9	1.3	25.8	100.0
	미혼	567	79.6	3.5	16.9	100.0
	이혼사별	1,162	52.7	1.0	46.3	100.0
25 ~ 54세	유배우	720	73.8	1.6	24.5	100.0
	미혼	471	84.0	3.9	12.1	100.0
	이혼사별	606	77.6	2.2	20.3	1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보인다. 기타가구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5%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는 고용률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된다. 25~54세의 핵심연령대로 좁혀 보면 여성가구주 고용률은 80% 수준까지 높아지지만 여성배우자의 고용률은 그다지 상승하지 않는다.

둘째, 여성가구주를 혼인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고용률을 비교해 보면 미혼가구주 고용률이 79.6%로서 가장 높고, 유배우가구주가 72.9%로서 그 다음이며, 이혼사별가구주는 52.7%로서 가장 낮은 값을 갖는다. 핵심연령대로 좁힐 경우 이혼사별가구주의 고용률이 대폭 증가하여 유배우가구주의 고용률보다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 인적 특성

연령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여성배우자와 비교할 때 65세 이상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많다. 여성배우자는 25~44세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비해서 여성가구주는 55세 이상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기타가구원은 25세 이하가 절반을 차지하여 여성가구주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가구주를 혼인상태에 따라 세분하여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유배우가구주 중 65세 이상자의 비율은 8.9%인데 비해서 이혼사별가구주 중 65세 이상자의 비율은 44%로서 이혼사별가구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앞에서 우리는 15세 이상의 인구집단에서는 이혼사별가구주의 고용률이 매우 낮았는데 비해서 25~54세 인구집단에서는 고용률이 대폭 상승함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이혼사별가구주는 고연령일 가능성이 높는데 일반적으로 고령자들의 고용률이 낮기 때문에 이혼사별가구주의 고용률이 다른 특성의 가구주에 비해 고용률이 낮게 된 것이다.

학력수준의 차이는 여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 사이에서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가구주의 고졸자 비중은 70.7%인데 비해 여성배우자의 고졸

<표 4> 여성 유형별 연령구성비

(단위: %)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 이상	합 계
가구주	계	3.3	12.5	17.3	24.5	16.7	25.8	100.0
	유배우	0.6	9.5	26.7	35.7	18.6	8.9	100.0
	미혼	18.6	52.5	19.6	6.6	1.4	1.3	100.0
	이혼사별	0.0	1.4	10.7	23.3	20.5	44.0	100.0
배우자		0.7	18.6	31.4	26.7	13.5	9.0	100.0
기타가구원		49.8	23.7	3.9	1.9	4.1	16.7	100.0
합 계		15.3	18.8	20.5	19.1	11.5	14.8	1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5> 여성 유형별 학력 구성(25~54세)

(단위: %)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합 계
가구주	계	70.7	8.7	20.6	100.0
	유배우	74.2	7.4	18.4	100.0
	미혼	39.5	17.1	43.3	100.0
	이혼사별	88.8	4.2	7.0	100.0
배우자		67.1	11.3	21.6	100.0
기타가구원		35.6	26.2	38.3	100.0
합 계		58.8	12.7	28.5	1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자 비중도 그와 유사한 67.1%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학력수준에 의해 강하게 영향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성가구주 내의 유배우, 미혼, 이혼사별자의 학력별 구성을 비교해 보면 큰 편차가 존재한다. 미혼가구주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이 매우 높아 43.3%를 차지하는데 비해서 이혼사별자의 경우 대졸자의 비중은 7%에 불과하다. 반대로 고졸 이하자의 비중은 미혼가구주가 39.5%에 불과하여 유배우자와 이혼사별자의 74.2%, 88.8%와 비교할 때 매우 낮다.

<표 6>에서는 유배우 가구주와 미혼가구주 그리고 이혼사별가구주의 학력수준별 고용률을 볼 수 있다. 미혼가구주와 이혼사별가구주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데 비해서 유배우가구주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오히려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표 6〉 가구주 유형별·학력별 고용률(25~54세)

(단위: %)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	합 계
유배우	75.2	71.1	69.3	73.8
미혼	77.4	91.7	86.9	84.0
이혼사별	77.1	82.1	81.2	77.6
합 계	76.3	82.7	79.7	77.5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IV. 취업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특성과 근로조건

이상에서는 여성배우자와 비교할 때 여성가구주는 노동시장 참여가 높으며 연령구성을 통제할 경우 이혼사별가구주가 유배우 가구주에 비해 고용률이 더 높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혼사별가구주의 경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률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취업한 여성가구주의 일자리 특성은 취업한 여성배우자와 비교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구주의 유형 차이에 따라 일자리 특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 보자. 이하의 분석에서는 주로 25~45세 핵심연령대를 대상으로 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일자리 특성

우선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살펴보자. 여성가구주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75%인데 비해서 여성배우자의 임금근로자 비율은 66%로 여성가구주가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를 낳는 것은 대부분 여성가구원이 무급가족종사자인 비중이다. 여성배우자는 남성가구주의 자영업 활동을 돕는 무급가족종사자로서 일하는 비율이 높다. 참고로 20~30대가 주를 이루는 여성가구원 중 취업자는 대부분 임금근로자이며(90%)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매우 낮다.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종사상 지위별 분포를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용직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 중 상용직의 비중은 39%인데 비해서 여성배우자는 44%이며 기타가구원은 60%이다.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여성 취업자 전체로 볼 때 1~4인에 45%, 5~9인에 15%가 있다. 흥미로운 것은 여성가구주와 배우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살펴보면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영세사업장에 취업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경우 31%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해 있는데 비해서 배우자는 26%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해 있다.

다음으로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자. 여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는 대체로 유사한 산업에 분포하고 있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차이가 주로 나타나는 산업은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이다. 여성가구주의 음식숙박업 종사비율이 26%로 매우 높고, 도소매업이 16%로 상대적으로 낮는데 비해서, 여성배우자의 경우 도소매업에 21%, 음식숙박업에 17% 종사하여 여성가구주와 반대의 패턴을 보인다.

<표 7>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전체 취업자, 25~54세)

(단위: %)

종사상 지위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상용직	28.87	28.44	54.04	32.14
임시직	34.59	28.14	32.98	30.42
일용직	11.00	8.07	3.04	8.09
고용주	7.19	3.64	1.48	4.22
자영자	18.31	12.14	5.79	12.78
무급가족종사자	0.04	19.57	2.67	12.3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체 규모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1~4인	45.54	46.89	28.86	43.61
5~9인	15.19	13.66	18.23	14.77
10~29인	14.90	15.16	20.01	15.89
30~99인	14.03	14.06	16.14	14.39
100~299인	5.11	5.26	7.68	5.62
300인 이상	5.23	4.98	9.08	5.71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단시간근로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36시간 이상	85.85	79.76	86.19	82.35
36시간 미만	14.15	20.24	13.81	17.6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8> 여성 취업자의 일자리 특성(임금근로자, 25~54세)

(단위: %)

종사상 지위	여성가家主	여성배우자	기타가무원	합 계
상용직	38.77	43.99	60.00	45.49
임시직	46.46	43.53	36.62	43.06
일용직	14.78	12.48	3.37	11.4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사업체 규모	여성가家主	여성배우자	기타가무원	합 계
1~4인	30.92	25.73	21.73	26.23
5~9인	18.43	17.15	19.58	17.96
10~29인	19.07	21.52	22.15	21.03
30~99인	18.17	20.57	17.93	19.44
100~299인	6.63	7.72	8.53	7.61
300인 이상	6.79	7.31	10.09	7.7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근속기간	여성가家主	여성배우자	기타가무원	합 계
1년 미만	40.74	38.30	34.79	38.22
1년	17.09	15.28	18.92	16.49
2~4년	19.57	19.92	28.37	21.56
5~9년	12.93	14.28	14.30	13.93
10년 이상	9.67	12.22	3.62	9.8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단시간근로	여성가家主	여성배우자	기타가무원	합 계
36시간 이상	85.56	79.09	88.07	82.65
36시간 미만	14.44	20.91	11.93	17.3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은 종사상 지위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도소매업에서 여성가家主나 배우자의 상용직 비중은 13% 내외인데 비해서 음식숙박업에서 상용직 비중은 4%에 불과하다. 음식숙박업이 상대적으로 더 불안정한 일자리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가家主와 여성배우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또 하나의 산업은 교육서비스업이다. 여성가家主가 교육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10%인데 비해서 여성배우자는 13%로

<표 9> 여성 취업자의 산업·직업 분포(전체, 25~54세)

(단위: %)

산 업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농림업	1.43	4.60	0.56	3.17
어업	0.06	0.17	0.01	0.12
광업	0.04	0.01	0.01	0.02
제조업	15.33	16.44	10.58	15.22
전기가스업	0.25	0.16	0.18	0.19
건설업	1.56	1.98	2.71	2.00
도소매업	15.30	18.17	15.78	17.09
음식숙박업	22.54	14.35	6.72	15.07
운수업	1.12	0.87	1.99	1.11
통신업	0.52	0.70	0.95	0.70
금융보험업	4.90	4.37	5.64	4.70
부동산임대업	1.57	1.92	1.11	1.70
사업서비스업	6.43	5.83	10.52	6.74
공공행정업	2.40	2.76	3.60	2.81
교육서비스업	10.34	12.64	20.33	13.35
보건복지업	5.46	6.47	10.09	6.82
오락문화업	2.58	1.48	3.72	2.11
기타공공개인업	6.80	6.07	4.90	6.05
가사서비스업	1.31	0.98	0.59	1.00
국제기관	0.04	0.02	0.00	0.02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직 업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고위관리직	0.76	0.59	0.11	0.55
전문직	9.34	9.71	19.71	11.26
준전문직	8.57	9.54	17.75	10.66
사무직	15.29	16.88	36.36	19.69
서비스직	28.12	20.37	10.41	20.60
판매직	14.22	16.20	9.23	14.58
농림어업직	0.88	4.19	0.47	2.79
기능직	4.49	4.37	0.72	3.80
기계조립직	4.22	4.23	1.94	3.85
단순노무직	14.10	13.93	3.30	12.2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0> 여성 취업자의 산업·직업 분포(임금근로자, 25~54세)

(단위: %)

산 업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농림업	0.85	0.77	0.10	0.66
어업	0.07	0.10	0.00	0.07
광업	0.06	0.02	0.01	0.03
제조업	17.98	20.19	11.44	17.89
전기가스업	0.32	0.24	0.20	0.25
건설업	1.87	2.18	2.99	2.27
도소매업	13.95	14.47	15.57	14.56
음식숙박업	20.10	11.78	5.99	12.70
운수업	1.35	1.02	2.10	1.32
통신업	0.61	0.86	1.06	0.84
금융보험업	6.02	6.21	6.19	6.16
부동산임대업	1.24	1.65	1.14	1.45
사업서비스업	7.73	7.66	11.05	8.36
공공행정업	3.11	4.06	4.00	3.81
교육서비스업	10.33	14.11	18.83	14.11
보건복지업	6.77	9.02	11.11	8.87
오락문화업	1.82	0.87	3.29	1.59
기타공공개인업	4.08	3.34	4.29	3.71
가사서비스업	1.67	1.42	0.65	1.33
국제기관	0.05	0.03	0.00	0.0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직 업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고위관리직	0.41	0.27	0.09	0.27
전문직	10.53	12.32	20.06	13.42
준전문직	7.36	9.42	16.28	10.28
사무직	19.10	21.20	39.87	24.41
서비스직	22.50	16.61	9.01	16.56
판매직	12.47	12.38	8.50	11.63
농림어업직	0.14	0.16	0.02	0.13
기능직	4.51	4.02	0.60	3.46
기계조립직	4.92	5.15	2.10	4.48
단순노무직	18.07	18.48	3.47	15.38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서 여성배우자의 교육서비스업 종사비중이 더 높다. 임금근로자를 비교하면 각각 10%와 14%로 그 차이는 좀더 커진다.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자. 여성가구주의 28%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15%가 사무직에 종사한다. 이에 비해 여성배우자는 20%가 사무직, 17%가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사무직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지만 서비스직의 비중에서 여성가구주가 여성배우자에 비해 확연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판매직의 비중은 각각 14%와 16%로 대체로 비슷하지만 여성배우자가 소폭 더 많다. 여성배우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한 대표적 직종은 농림어업직으로서 배우자의 비중이 가구주에 비해 3%p 가량 높다.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하고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농림어업직 임금근로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성가구주는 서비스직에 주로 분포하고 여성배우자는 사무직에 주로 분포한다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여성가구주의 23%가 서비스직에 종사하며 19%가 사무직에 종사한다. 이에 비해 여성배우자는 21%가 사무직, 17%가 서비스직에 종사한다.

2. 근로조건

가구주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월소득을 가능하면 높이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며 이에 따라 가구원보다 긴 근로시간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은 실제 근로시간 비교자료에서도 확인되어 여성가구주가 여성배우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더 길다. 여성가구주는 주당 46.5시간 일하지만 여성배우자는 43.4시간 일하여 여성가구주가 3.1시간 더 일한다.

이를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시간 격차가 비임금근로자일 때보다 임금근로자일 때 더 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가구주와 배우자가 각각 47.9시간, 43.5시간으로 4.4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해 임금근로자의 경우 각각 40.3시간, 34.0시간으로서 6.3시간의 격차를 보인다.

근로시간의 차이는 단시간근로자의 비율을 비교함으로써도 확인할 수 있다.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중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경우 그 비율이 14%인데 비해서 배우자는 20%로서 배우자가 6%p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자로 비교할 때도 14%와 21%로 격차가 비슷하다.

산업별로 세분하여 보아도 대부분의 산업에서 여성가구주가 여성배우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에서 가구주는 49.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서 배우자는 46.6시간을 일한다. 교육서비스업에서는 가구주가 36시간을 일하는데 비해서 배우자는 32.7시간을 일한다. 음식숙박업에서 가구주는 55시간을, 배우자는 54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것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나누어 비교해 보면 비임

금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차이가 거의 없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속기간은 노동의 수요 측면에서 볼 때 고용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척도로 해석할 수 있다. 노동의 공급 측면에서 해석하면 근속기간은 노동시장 결속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근속기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임금근로자에 한정하여 가구주와 배우자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평균 근속기간을 비교해 보면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0.5년 정도 적게 나타난다. 가구주와 배우자의 차이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다. 상용직과 임시직,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임시일용직에서 근속기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데 비해 상용직에서 0.7년 정도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더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속기간의 분포를 이용해서 살펴보아도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1년 미만 근속자가 38%로서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단기근속자의 비중이 28%로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이다. 여성가구주 중 1년 미만 근속자는 41%이고 여성배우자 중 1년 미만 근속자는 38%로서 가구주의 단기 근속이 좀더 많은 편이며 그 차이는 적은 편이다.³⁾

다음으로 임금수준을 비교해 보자.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우자에 비해 더 많은 월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선호할 것이다. 임금에 대한 정보는 3월과 8월의 부가조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8년 8월 부가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임금수준을 비교하였다. 상용직의 경우 가구주는 186만 원이고 배우자는 191만 원으로 가구주가 5만 원 정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임시직은 각각 120만 원, 106만 원으로 가구주가 더 많이 받고 있으며 일용직의 경우에도 가구주가 81만 원인데 비해 배우자는 69만 원으로 역시 가구주가 더 많이 받고 있다.

월소득은 시간당 임금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얻어진다.⁴⁾ 월소득만을 비교해서는 정확한 비교를 할 수 없으므로 시간당 임금으로 비교해 보았다. 상용직과 임시직의 경우 가

3) 미혼 여성이 많이 분포한 가구원의 경우 오히려 1년 미만이 적고 상대적으로 1년에서 5년 사이의 근속기간을 갖는 이들이 많은 편이다.

4) 앞서 살펴본 근로시간은 15일이 속한 주의 주업시간과 부업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인데 비해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근로시간은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이므로 차이가 있다. 또한 일용직의 시간당 임금 계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분모가 되는 임금수준은 월평균인데 비해서 분자가 되는 근로시간은 주평균이다. 문제는 일용직의 경우 한 달 내내 일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한 달 사이의 근로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다. 이에 따라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는 식의 분모의 값이 과대평가되어 시간당 임금 자체는 과소평가될 위험이 있다. 실제 200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3,700원 이상 수준인데 비해서 계산된 일용직의 최저임금은 2,700원 수준이다.

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더 낮은 시간당 임금을 받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근로시간 측면에서 가구주와 배우자의 차이가 거의 없다. 상용직 가구주의 월평균 임금이 배우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낮은 이유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상용직의 근로시간은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또는 44시간으로 큰 차이 없이 주어져 있다. 이런 점에서 상용직의 월소득 차이는 시간당 임금에서 주로 나타난다. 왜 상용직에서 여성배우자가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것인가? 우선적으로 선별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 상용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배우자는 출산육아기의 부정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긴 근속기간과 경력연수를 가진 이들일 가능성이 크다.

임시직의 경우 가구주의 근로시간이 길다. 그런데 시간당 임금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가구주의 시간당 임금이 더 낮다. 근로시간과 시간당 임금은 월소득을 결정짓는 측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근로시간의 차이가 더 큰 영향을 미쳐서 가구주가 13만 원 더 많은 월소득을 올리고 있다. 일용직의 경우 시간당 임금 측면에서도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더 많고, 근로시간 측면에서도 가구주가 더 많아서 일용직 월임금 수준에서 가구주가 더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모별로 차이를 살펴보았다. 시간당 임금 측면에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다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커질수록 여성배우자의 시간당 임금이 여성가구주에 비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근로동기나 숙련도, 근로능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배우자들이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이탈하지 않고 남아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V. 여성가구주의 실직과 재취업

1. 실직관련 특성

제Ⅲ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성 중 36.4%가 비취업상태에 있으며 핵심연령대에 한정하면 22.5%가 비취업상태에 놓여 있다. 비취업상태는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로 구분되는데, 핵심연령대 여성 비취업상태 중에서 96%가 비경제활동상태에 놓여 있다. 즉,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의 비율은 4%에 불과하다. 여성가구주를 여성배우자와 비교해 보면 비취업 여성가구주 중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10%에 이르며 이에 비

<표 11> 여성 유형별 실직 특성

(단위: %)

실직기간 I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1년 미만	38.29	21.37	38.03	25.02
1년 이상	61.71	78.63	61.97	74.98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실직기간 II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3개월 이하	55.97	47.10	49.50	49.03
4~6개월	22.81	25.62	24.56	24.96
7~9개월	14.00	17.80	17.16	17.03
10~12개월	7.22	9.48	8.78	8.97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전직 종사상 지위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상용직	12.71	16.45	27.35	17.50
임시직	42.96	34.99	45.42	38.01
일용직	26.82	23.84	14.29	22.87
고용주	4.52	2.06	0.85	2.30
자영자	12.54	9.77	7.32	9.87
무급가족종사자	0.46	12.90	4.77	9.4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전직장 규모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1~4인	53.86	50.17	38.41	48.98
5~9인	18.23	16.45	20.30	17.37
10~29인	14.67	15.80	18.95	16.09
30~99인	7.87	9.64	9.84	9.36
100~299인	3.10	4.01	7.38	4.38
300인 이상	2.28	3.93	5.11	3.8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실직 사유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비자발	28.58	32.03	18.12	29.25
자발	71.42	67.97	81.88	70.75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표 12> 여성 유형별 실직 특성(25~54세)

(단위: %)

실직기간 I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1년 미만	25.15	20.58	30.35	23.71
1년 이상	74.85	79.42	69.65	76.29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실직기간 II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3개월 이하	54.44	48.28	49.00	49.67
4~6개월	23.31	25.32	25.78	25.08
7~9개월	14.67	17.25	16.82	16.63
10~12개월	7.58	9.16	8.40	8.63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전직 종사상 지위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상용직	8.65	13.38	12.39	12.18
임시직	34.36	31.37	37.17	33.69
일용직	33.89	24.50	36.94	30.06
고용주	3.11	1.68	0.50	1.59
자영자	19.28	9.88	7.57	10.97
무급가족종사자	0.71	19.19	5.42	11.50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전직장 규모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1~4인	57.73	55.15	45.95	52.86
5~9인	16.07	15.48	20.31	17.06
10~29인	14.58	14.02	16.56	14.90
30~99인	6.66	8.37	7.95	7.91
100~299인	2.99	3.66	5.71	4.15
300인 이상	1.97	3.32	3.52	3.12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실직 사유	여성가구주	여성배우자	기타가구원	합 계
비자발	35.95	36.64	18.53	31.03
자발	64.05	63.36	81.47	68.97
합 계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 비취업 여성배우자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은 1.7%에 불과하다.

비취업기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취업기간이 더 길며 여성은 가구주가 배우자에 비해 짧은 실직기간을 갖는다. 핵심연령층에서 남성의 경우 48%가 1년 이상의 실직기간을 경험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은 75%에 달한다. 같은 여성이라도 여성가구주의 경우 62%가 1년 이상의 실직기간을 갖는데 비해서 여성배우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실직기간을 갖는 이의 비중이 79%로서 가구주보다 훨씬 높다. 여성가구주는 가구 생계를 책임지고 있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성향이 낮는데 비해서 여성배우자는 경력단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실직자의 전 직장의 사업체 규모별 구성을 비교해 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의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다. 취업자의 현 직장 사업체 규모별 구성과 비교해 보면 실직자의 구성이 취업자 구성에 비해 소규모 사업장에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선이 되는 규모는 30인 기준이다. 규모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많은 실직자가 배출되며 30인 이상에서는 실직자가 적게 배출된다.

실직사유는 크게 자발적 이직과 비자발적 이직으로 구분된다. 핵심연령대 남성이 58%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데 비해서, 여성 이직자 중 71%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그 비율이 매우 높다. 여성을 다시 가구주와 배우자로 구분해 보면 여성가구주의 자발적 이직 비율은 71%인데 비해, 여성배우자는 68%로서 여성가구주의 자발적 이직이 더 높은 값을 갖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실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면 3개월 이하의 짧은 실직기간을 가진 이들에서 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여성가구주가 여성배우자에 비해 높으며 그 크기 차이는 8~9%p 가량으로서 전체 여성의 차이 3%p에 비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비해 6개월 이상의 긴 실직기간을 가진 이들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 비중은 여성가구주가 아닌 여성배우자에서 더 높다. 평균적으로 비교해 보면 여성가구주는 더 나은 임금 및 근로조건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옮기며 실직에 머무르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는데 비해서, 여성배우자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직장을 떠나며 비교적 긴 기간 실직을 경험하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고 평가된다.

2. 노동시장 이행확률

실직상태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변화한다. 실업과 취업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 사이의 끊임 없는 이동이 노동시장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상태이동을 간단하게 측정해 내는 방법이 이행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이행의 특징을 이행확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사용한 자료는 2008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이다. 개인 식별번호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월별 가구식별번호를 이용하여 가상의 가구식별번호를 생성하고 이를 개인의 연령과 성 변수를 이용하여 패널로 연결가능한 가상의 가구식별번호를 생성하여 사용하였다.⁵⁾ 그 결과는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취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될 월간 이행확률이 핵심연령층 남성의 경우 0.8%인데 비해서 여성은 2.4%로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더 크다. 반대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은 남성은 7.8%에 달하지만 여성은 4.1%에 그친다. 또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상태로 전환할 확률도 남성이 3.3%인데 비해서 여성은 0.7%에 그치고 있다. 여성은 실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할 확률에서도 남성보다 낮으며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전환될 확률은 여성이 더 높다. 요약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실직할 확률도 높고 실직한 후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직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다시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 내부에서 여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를 비교해 보면 흥미롭게도 비취업자의 구직확률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가구주가 이번 달에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여 다음 달에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29.3%이며 여성배우자가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30.1%로서 거의 비슷하다. 취업자의 실직확률도 2.4%와 3.1%로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와 취업상태 사이의 이행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여성가구주와 여성배우자의 가장 큰 차이는 비경제활동상태로의 유입확률과 비경제활동상태로부터의 탈출확률에서 드러난다. 여성가구주가 실업상태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입될 확률은 15.4%인데 비해 여성배우자가 구직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5.1%p 높

<표 13> 경제활동상태의 월간 이행확률(2008년 평균)

		e→e	e→u	e→n	u→e	u→u	u→n	n→e	n→u	n→n
전 체	남성	97.88	0.67	1.45	23.54	66.09	10.37	3.96	1.15	94.89
	여성	96.39	0.48	3.13	24.92	58.14	16.93	3.32	0.48	96.19
	여성가구주	97.32	0.47	2.21	28.50	55.32	16.18	4.46	0.75	94.80
	여성배우자	96.54	0.26	3.20	29.46	50.04	20.50	3.63	0.34	96.03
25~54세	남성	98.50	0.67	0.83	22.77	68.07	9.16	7.83	3.27	88.90
	여성	97.16	0.43	2.41	26.38	56.85	16.77	4.10	0.65	95.25
	여성가구주	97.66	0.57	1.77	29.33	55.23	15.44	6.06	1.31	92.63
	여성배우자	96.92	0.28	2.79	30.12	49.32	20.56	3.77	0.44	95.79

주: e 취업, u 실업, n 비경제활동.
 자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5) 자세한 방법에 대해서는 김혜원 외(2008) 참조.

은 20.5%이다. 또한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탈출할 확률은 여성가구주가 6.1%인데 비해 여성배우자는 3.8%로서 여성가구주의 2/3 수준에도 못미친다.

VI. 결론

이 글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2008년 현재 여성가구주가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스냅샷으로 보여주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로 인해 왜 그러한 현상이 관측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이 글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성가구주는 비록 높은 빈곤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다른 어떤 인구집단 못지 않게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핵심연령대의 여성가구주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0%에 육박하여 남성의 고용률에 비견될 수준이다. 노동시장 이행확률을 통해서도 여성가구주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를 확인할 수 있다. 여성배우자와 비교할 때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구직확률 측면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으나,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입되는 확률이 낮고 비경제활동상태를 탈출하는 확률이 높다.

양적인 측면에서의 활발한 양상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 여성가구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여성배우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근로하고 있으며 이에 비해 상용직과 임시직에서 여성가구주의 시간당 임금은 여성배우자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구 생계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여성가구주에 비해 여성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선별된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노동시장 결속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배우자에 비해 오히려 떨어지는 점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으로 시사하고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글에서 제시된 몇 가지 잠정적 결론은 다른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엄밀한 분석에 의해 추후 보완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수정(2008),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가구주의 빈곤」, 『보건사회연구』 28(2), pp.33 ~ 52.
- 김안나(2006), 「한국사회 여성빈곤과 빈곤대책」, 『보건사회연구』 26(1).
- 김혜원 외(2008), 『직장이동의 노동시장 효과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영·변화순·윤홍식(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 : 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pp.37 ~ 63.
- 노혜진·김교성(2008),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가구주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에 관한 중단연구」, 『사회보장연구』 24(4), 한국사회보장학회.